

〈醫療法을 중심으로〉

韓 哲 愚

〈본회 출판부장〉

1. 序

國民醫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적정을 기하여 國民의 健康을 保護增進함을 目的으로 制定된 醫療法은 1951. 9. 25 法律 제221호로 國民醫療法으로 公布되어 施行된 후 1962. 3. 20 法律 제1035호로 醫療法으로 改稱되어 1963. 12. 13, 1965. 3. 23 두 차례의 改正을 거쳐 1973. 2. 16 法律 제2533호로 全文改正(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 정리한 개정)한 후 1975. 12. 31, 1981. 12. 31 두 차례 改正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急變하는 時代的 變化나 科學의 發展에 맞는 方向으로의 改正에는 미흡함이 없지 않다 하겠다.

이것은 現代社會가 多變化하고 複雜化함에 따라 모든 業務가 細分化되고 分業化되는 必然的 과정속에서 相互 協同의이고 의존적인 유대없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게끔 社會구조가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時代的 요청에 부응하는 方向으로 法改正이 신속히 따라야 하며 이는 당국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推進하여야 할 과제이다.

2. 醫療法令의 改正內容 및 本會 提案 內容

國民이 바라는 健康管理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전문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런 건강관리를 國民에게 전달하기 위해 必要로 되는 人力, 施設, 方法도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다.

오늘날 看護의 대상은 患者는 물론 健康한 사람까지를 포괄하게 되었고 看護를 제공하는 조직도 病院, 地域社會, 産業場, 學校등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 활동범위도 다양해 졌다 따라서 인간이 生活하는 거의 모든 조직속에 看護가 필요하게 되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看護事業의 효율과 효과를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동안 건강은 질병을 퇴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病院(治療事業)이 중점적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地域社會 健康問題는 좋은 치료 시설을 많이 만들면 國民의 一般의인 건강수준이 向上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 결과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갖고 오는데에 무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수가 없었으며 의료자원의 낭비, 도시 농촌간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의료 문맹의 편중 및 의료수가의 양등을 가져왔다.

따라서 本會는 이런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醫療法”을 “保健醫療法”으로 그리고 기타 법령(모자보건법, 의료보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근로보건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계속 주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다.

가. 醫療法

1) 看護員의 任務

改正전 醫療法은 看護員의 任務는 “看護員은 傷病者 또는 解産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라고 規定되어 왔다.

이것은 看護員의 업무는 獨自的으로 行할 수 있는 兩 職業 療養, 看護 및 그 指導와 독자적 으로 行할 수 없는 업무 즉 診療시 補助로 構成 되었다고 解釋된다.

그러나 본회의는 看護員의 業務와 機能이 傷病者, 解産婦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상 人口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保健醫療事業이 전개되어야 하는 시대의 要求를 주장하여 “看護員은 保健醫療의 看護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로 改正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看護員은 傷病者 또는 解産婦의 療養上의 看護 또는 診療의 補助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健活動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로 改正되었다.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健活動이란(醫療法 施行令 제 2조)

1) 農漁村 保健醫療을 위한 特別措置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診療員으로서 하는 保健活動(保健診療員은 醫療法 제25조의 規定에 불구하고(의료법 제25조: 醫療人이 아니면 누구든지 醫療行爲를 할 수 없으며 醫療人도 免許된 以外의 醫療行爲를 할 수 없다)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의료행위란

- (1) 傷病狀態를 判別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 (2) 患者의 移送
- (3) 外傷등 흔히 볼 수 있는 患者의 治療 및 應急을 요하는 患者에 대한 응급처치
- (4) 傷病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6) 정상 분만시의 개조 및 家族計劃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위의 醫療行爲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以外에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의 指導監督을 받아 할 수 있는 醫療行爲로는

- (1) 환경시설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2) 疾病豫防에 관한 業務
- (3) 家族計劃을 포함한 母子保健에 관한 業務
- (4) 住民의 健康에 관한 업무를 擔當하는 자에 대한 敎育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5) 其他 住民의 保健醫療增進에 관한 업무등이다.

따라서 종전에 금지되었던 獨自的인 醫療行爲가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可能하게 되었다.

2) 母子保健法 제 5조 또는 제 7조의 規定에 의하여 母子保健要員 또는 家族計劃要員으로서 하는 保健活動(안전분만조치 및 자궁강내에 피임용기를 삽입하는 수태조절)

3) 結核豫防法 제29조의 規定에 의하여 結核管理要員으로서 하는 保健活動

4) 其他의 法令에 의하여 看護員의 保健活動으로 定한 業務

(1) 學校保健에 관한 看護敎師의 業務

- 學校保健管理 計劃
- 學校환경위생의 유지 및 개선
- 學校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과 유지
-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診斷 준비 및 실시 보조
- 各種 疾病의 예방처치 및 保健指導
- 校內 發生 應急患者 및 사고자의 敎急看護와 조치
- 健康相談
- 양호실의 운영관리

(2)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保健담당자의 업무(保健管理者의 職務補助)

- 勤勞者의 건강상태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健康診斷의 實施
- 勤勞者의 保健에 관한 敎育
- 作業환경의 측정 및 평가
- 作業場內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 改善 및

간호관계 법령 어떻게 달라졌나

設計에 관한 지도

- 作業方法의 위생공학적 개선
- 保健에 관한 重要事項의 기록 및 保存
- 其他 勤勞者의 保健에 관한 사항

(3) 兒童福利法에 의한 兒童福利指導員으로서의 業務

-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한 상담
- 兒童福利施設 또는 要 保護兒童의 調査指導 및 監督
- 其他 兒童福利增進에 관한 일

(4) 其他 生活保護法·社會福祉事業法에 의거 看護員으로서 行하는 保健活動等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獨自의인 醫療行爲가 除限된 범위내에서나마 可能하도록 明文化된 것이다.

2) 醫療機關의 種別

醫療法 제 3조 제 2항에 의하면 “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漢房病院·齒科病院·漢醫院 및 助産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一次保健 醫療事業에 대한 效率的인 遂行과 一次保健醫療의 직업자인 看護員의 效率的인 活動을 위하여서는 看護員이 獨自의로 一次健康管理을 실시할 수 있는 “健康管理院”과 助産資格을 가진 看護員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保健醫療과 看護를 行할 수 있는 “母子保健院”을 醫療機關에 新設하여 將것을 제의 했으나 의료법 개정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都市·農村간의 醫療不均衡을 多少나 減소하기 위해 僻오지 區의지역에 대한 于先的인 정책시행으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保健診療所의 改設을 先行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醫療制度의 擴大와 實施에 따라 必要로 되는 地域社會의 保健醫療機關으로 配備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간호보조원

간호보조원은 본회가 계속 육성, 지도해야 할 보조인력이다. 간호보조원은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 시행령 및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동 규칙 제14조 제 2호에 의할 경우에는 간호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전문특수성과 의료의 적정,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의 면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간호보조원의 교육배경이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학원에서 740시간의 학과교육(시험과목: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 및 전염병 관계 법규)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거쳐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인력이 간호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해 본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附제된 사항만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별도 규정에 들 것과 간호보조원의 학력을 상향 조정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취업반을 신설하느로서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인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하고 상급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또한 계속 교육을 통해 간호원이 될 수 있는 교육제도(야간 간호전문대학)의 장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본회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겠으나 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의료법 시행령

1) 의료인 신고

중전에는 의료인의 취업 상황을 매년 신고하도록 정기신고로 규정하였으나 의료인의 취업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사회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수시 신고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본회는 의료인의 신고율이 정기신고시에도 59%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수시로 하는 경우 신고율의 저하와 의료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제현황 파악이 어려워 의료정책수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

시 신고를 폐기하고 매년 신고가 문제가 있다면 2년 정도의 정기신고로 개정하더라도 정기적인 신고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시 신고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수시 신고제도는 2년정도로 계속 신고하는 정기적인 의미의 수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看護員의 定員

醫療法 施行規則에 규정된 看護員의 定員은 “1일 入院患者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追加하되 外來患者 12인은 入院患者 1인으로 환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은 國民醫療法 施行細則 施行當時인 1951년의 기준인 “入院患者 5인에 看護員 1인 外來患者 30인에 看護員 1인”의 비율과 비교할 때 入院患者 5인에 看護員 1인이 2인으로 증가된 것 외에는 30여년이 지난 현재 醫科學이 專門化되고 分業化된 과정과 人口의 증가에 비추어 그 산출기준에 적지않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會는 患者에 看護員의 비율을 “入院患者 2인에 대하여 看護員 1인을 기준으로 하고 外來患者 6인을 入院患者 1인으로 환산하며 다만 重患者室, 회복실, 응급실은 患者 1인에 대하여 看護員 1인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現在 醫療法施行規則에 定한 患者對 看護員의 數가 적정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것은 醫療現場에서 우리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現實이다. 病院의 증축, 最新醫療장비의 구입등 物理的인 量의 팽창이 바로 醫療의 發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不足한 人力으로 인한 患者와의 대화단절,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 근무의욕의 저하등의 여건에서 진정된 看護를 기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적정선의 인력확보는 必然的이며 최소한 중환자실, 응급실, 회복실에 대한 적정 인력만이라도 속히 확보될 法的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1) 국가시험

현행 간호원 국가시험 과목인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 간호학, 소아과 간호학, 신경정신과 간호학, 간호사회학, 보건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는 간호교육기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과정과 상이하여 현실성있는 국가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회에서는 간호원 국가시험의 과목을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전문 직업론, 간호판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중 전문직업인으로서의 倫理, 職業觀, 精神, 歷史등이 醫療行爲의 기본적 요소가 됨을 중시하여 “간호전문직업론”을 시험과목으로 삼입하였으나 간호전문직업론이 삭제되고 나머지는 본회 안데르 개정되어 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시험과목의 합격기준에 대하여 증전에는 의사의 경우 14개 시험과목중 8개과목, 치과의사의 경우 10개과목 중 5개과목, 한의사의 경우 9개 과목중 3개 과목만 과락을 인정하고 나머지 과목은 과락없이 전체 평균 점수가 60이상이면 합격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인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같은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가 합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2) 補修教育

人間的 健康增進과 疾病豫防을 그 주임무로 하는 醫療人에게 重要한 것은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계속 습득하고 익혀 實際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醫療人에게 補修教育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醫療法에서 정한 補修教育이 방법·대상·기간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效果的인 教育이 實施되지 못하였다.

補修教育자체가 義務條項이면서 不履行時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方法이 效界的이지 못하여 實際的인 教育의 效界를 기대할 수 없었다.

간호관계 법령 어떻게 달라졌나

따라서 本會는 補修教育을 主務部處의 管여하에 中央會가 完전히 管轄하되 補修教育 未履修者에 대한 보다 強化된 行政의 制裁수단 즉 就業의 除限, 免許의 停止등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시기는 매년 1회이상, 대상은 의료인, 이수시간은 40시간, 교과과정은 이론 40% 실습 30% 교양 20% 관계법규 10%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2. 12. 31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중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1) 실시는 中央會의 長이 保健社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2) 시기 및 教育時間 : 매년 1회이상, 연간 10시간이상

3) 실시기관 : 中央會의 長이 다음중에서 지정
(가) 中央會

(나) 지부(여기에서 支部라 함은 醫療法에 의해 設立된 醫療人의 中央會의 各市·道支部를 말하며 산하단체, 分會, 學會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醫科大學·齒科大學·漢醫科大學 및 그 附屬病院

(예) 病床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4) 대상·의료기관 종사자

5) 補修教育 면제대상자

(가)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학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研究하고 있는 者로서 患者 診療業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者

(나) 軍服務中인 者(현역)

(다) 전공의

(예) 本人의 疾病등 사유로 補修教育을 받기가 곤란한 자 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補修教育을 받을 必要가 없다고 인정한다.

但 면제대상자는 補修教育 실시전에 補修教育 免除申請書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支部의 長을 거쳐 中央會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補修教育의 교과과정, 실시방법등 必要한 事項은 中央會의 長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補修教育의 대상자를 醫療機關에 從事하는 者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醫療人은 該當이 아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醫療法 제28조 제3항에 “醫療人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제2항 : 中央會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補修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고 義務化하고 있으므로 中央會나 支部를 통하여 當然히 補修教育을 받아야 하며 醫療人이 정당한 事由없이 醫療人의 申告 및 補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月以上 1年以下의 資格을 停止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간호기록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에 규정된 간호기록부는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에 대한 기록은 그 내용이 충실할수록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며 의료진의 교대에 따른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행의 규정이 이를 뒷받침 하기에는 미흡하여 본회는 간호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으로서

- 간호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번호 건강력, 간호력, 가족력
- 간호요구 사정에 관한 사항
- 간호진단 내용에 관한 사항
- 간호계획에 관한 사항
- 간호수행에 관한 사항
- 간호과정의 평가 내용에 관한 사항
- 진료보조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원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깊이 있고 계획성 있는 간호기록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3.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가.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 의료봉사를 함으로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모자보건요원(의사,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이 이 사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의료봉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배경이 없는 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비 현실적으로 모자보건요원의 자격을 의료인에 한 하도록 제안하였으며

2) 가족계획 사업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 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수태 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가족계획요원(의사, 조산원, 간호원, 간호보조원) 또는 고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가족계획연구원에서 2주일간의 가족계획에 관한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이 사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의료인이 담당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본 법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보건의료요원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현재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원의 확보와 일차건강관리 확충 및 정착을 위하여 그 대상을 간호학생에까지 확대하여 준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관심있게 검토중으로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의료보험법

현행 의료보험수거에는 간호수가가 일괄포함되어 있어 간호수가를 독립시키므로써 간호치료의 이증 징수를 방지하고 전문인력의 업무에 따른 의료보험수가를 독립 규정하여 전문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료이전 예방에도 치중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운영개선을 주장하였다.

라.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보건관리요원의 자격을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 산업보건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주장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원만을 두도록 의무규정화하였으며 근로보건관리규정은 이 법의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4. 맺음말

本會는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시대적 과업에 看護事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健康福祉事業의 효율화를 위하여 1979년도에 이미 大韓看護協會 제1차 長期事業計劃案을 마련하였다.

本會가 마련한 主要政策課題中에는 看護關係 法令의 檢討 및 改正事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계속적인 努力을 하여 왔다.

앞에서 說明된 內容들이 本會가 의도한데로 전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이는 本會가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여 왔음을 뜻한다.

本회의 근본적인 구상은 醫療法에 규정된 看護員에 관한 내용이 가장 빠른 시기에 獨立된 “看護員法”으로 存在하는 것이다. 勿論 現在의 現狀이 이를 容易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전개하여온 看護事業을 토대로 또한 우리의 專門職業觀을 보다 發展시키고 專門化시킬 때 獨立된 法으로의 파생은 必然的인 시대적 요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努力이 必要할 것이며 特히 看護員 諸君의 積極적인 專門職業人으로서의 긍지와 직업의식 그리고 계속교육을 통한 看護의 발전이 팔리 이루어 질수록 우리가 바라는 方向으로의 진전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獨立된다는 것은 그만큼 責任과 義務가 커진다는 것을 意味하며 獨立된다는 것은 本人의 의식이나 資質도 중요하지만 주위가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보다 效果的으로 나타날 것이다.

간호관계 법령 어떻게 달라졌나

의료법령의 주요개정 조항

의료법

- 제 2조(의료인) ② 5. 간호원은 상형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 제11조(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12조(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 ⑥ 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협조의 의무) ③ 의료인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자격정지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료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

의료법 시행령

- 제 2조(간호원의 보건활동) 의료법 제 2조 제 2항 제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능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 5조 또는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요원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원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의료법 시행규칙

- 제 8조(시험과목등) ① 영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③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내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표 1.

구	분	시	험	과	목
간호원	국가시험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제21조의 2(보수교육)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법 제2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② 중앙회의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 의료기관에 증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증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 복무증인자
3. 전공의
4.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 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 11호의 2 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 중앙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 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시간
3.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4.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4.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 3 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 4(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 5(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